

## 출산장려 정책과 근로시간이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일옥\* · 왕희정\*\* · 정구철\*\*\* · 최소영\*\*\*\*

본 연구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들이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6세 미만의 한 자녀를 둔 여성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chi^2$  분석과 Mann-whitney's U 검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취업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주당 근로일수 그리고 출산지원정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취업 여성의 경우 연령과 출산장려정책의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출산장려정책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개발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단어:** 출산율, 출산장려, 근로시간, 출산의도, 둘째 아, 육아인프라, 일·가정 양립

### I. 서론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었다. 1970년대에 4.53명이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06명으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상태에 있으며, 2001년에는 1.29명으로 초저출산 상태에 진입하였고, 2005년 세계최저수준인 1.08명, 2010년 1.22명을 기록하여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 변화추이는 매우 급속히 둔화되어 인구구조

\*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교수 | kimio@syu.ac.kr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 sshwhj@hanmail.net

\*\*\*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상담심리학과 전임강사 | gcjeong@syu.ac.kr

\*\*\*\*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과 석사과정 | sfl244@hanmail.net

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결국 성장잠재력 저하, 재정건전성 악화 등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보건복지부, 2010).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아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정성호, 2009).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집단 혹은 단체 보다는 개인이 우선시 되는 풍조와 양적 문제보다는 질적 문제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성장의 문제보다는 복지로 문제의 초점이 이동하는 분위기와 맥을 함께 한다(이소영, 2007). 또한 경제적인 문제와 의식변화로 인한 만혼화 현상, 여성들이 가사와 자녀양육에 얽매이지 않으려 하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여성의 사회생활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을 대표적인 저출산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내 육아 지원의 약화와 육아인프라 및 보육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육아부담의 증가, 자녀양육에 의한 경제적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증가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이상호·이상현, 2010).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적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 이에 정부는 2005년 국가인구위기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마련하였으나 노동시장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행되어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총부양율이 가장 낮은 시기이므로 지금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적기로 판단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우리나라와 유사한 출산율 감소를 경험한 일부 선진국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양성평등지향적인 계획을 세워 유지율에 가까운 출산율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김민재, 2009; 은기수·전광희·윤홍식·김수정, 2005; 신경림·김일옥·이혜영, 2010). 이에 우리나라도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주로 한 제 2차 출산지원정책을 발표하였으며(보건복지부, 2010), 이러한 제 2차 정책을 수행하는데, 향후 5년간 약 57조원 규모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지원정책 지출 비중은 GDP 대비 0.3%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의 재정여건이 상이하나 OECD국가 평균 2.3%인 점과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일반적 변수나 출산장려정책들이 출산 의도나 계획, 정책의 선호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거나 출산결정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물론 출산이 외부의 조정에 의해 의도되어질 수도 있지만, 여성이 출산을 계획할 때에는 많은 내외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산을 회복이나 증가와 관련하여 정부가 한정된 예산안에서 정책의 변화를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개인이 영향을 받는 요인 중에는 좀 더 중요한 것과 좀 덜 중요한 것이 있으며, 개인마다 선호하는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소영, 2007).

자녀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인 부모들은 결정에 앞서 자녀 출산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효용과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효용 등 자녀를 갖는데 대한 경제적 가치를 따져, 경제적 효용이 비효용보다 높으면 자녀를 출산하게 되나 그렇지 않으면 출산율이 낮아진다(이소영, 2007). 자녀를 갖는데 대한 비효용은 자녀로부터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의미한다. 직접비는 양육비와 교육비이며, 간접비는 기회비용 즉, 자녀가 일하지 않고 학교에 다님으로 인해 잃게 되는 소득과 출산 및 육아로 인해 포기된 여성의 소득을 의미한다(김옥암, 2000).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을 통한 자녀의 생산재로서의 효용이 감소한데다 전통적인 효(孝)정신의 변화로 자녀의 잠재적 노후보장원천으로서의 효용가치까지 감소하여 기대이익이 감소하였고, 부모의 소득불안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조건이 출산휴가, 근무시간의 유연성, 질 높은 보육시설의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부모들에게 출산과 자녀양육이 취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북유럽 및 영미어권 국가의 경우 출산율과 여성의 취업률이 함께 높은 경향을 보인다(보건복지부, 2010). 이에 반해 남유럽 및 독일, 일본 등의 상대적 저출산 국가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배려가 적거나, 소극적인 가족친화정책으로 저출산이 가중되고 있다(신경림·김일옥·이혜영, 2010).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조건 및 보육시설 환경 등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원만하게 해 나가기에는 부적절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취업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취업보다는 출산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현상도 결혼 및 출산 기피를 심화시키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러한 현상이 특히 둘째 아 출산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통계가 입증해주고 있다. 둘째 자녀의 경우 1995~2000년 25~39세 여성의 합계출산률은 14.7%로 감소한데 반해 1995~2006년도에는 43.5%로 감소하였고 25~32세 여성들의 출산율은 50%가 감소

하는 등, 둘째 이상의 자녀는 지연보다는 기피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영태, 2009).

‘2009년도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보건복지부, 2009)에서도 미혼남녀의 자녀 기대관이나 기대자녀수는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출산이 기대되는 미혼여성의 한 자녀 선호도가 13% 증가한 것과는 달리 두 자녀 이상을 원하는 비율은 낮아졌다거나, 70% 이상의 미혼여성이 2명 이상의 자녀수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전의 출산과 양육 경험 등에 따라 둘째 아기 출산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권형례, 2009; 김혜정, 2010).

최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영태, 2009)에서 첫째 자녀의 출산은 전반적으로 출산을 기피하여 나타나는 양적(quantum) 효과보다는 출산을 지연하려는 속도(tempo)효과로, 첫째 자녀 출산연령이 고령화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둘째 이상 자녀들의 경우에는 연령층 별로 크게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속도 현상보다는 양적 효과가 두드러져,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됨을 지적한 바 있다. 박수미(2008)의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첫째 자녀의 성이 여아일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둘째 출산에 더 적극적이었으나, 전업주부의 경우, 성형평성 정도가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국 전업주부도 둘째 자녀 출산을 앞당기고 재취업을 피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일·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가족내 성 형평성 증대와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은과 진미정(2008)의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친정어머니가 생존할수록, 사회적 지원 욕구도가 높고,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비가 낮을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첫 자녀가 딸인 경우에 둘째 자녀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치관이 자녀출산의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가치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미혼자나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보다는 출산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통해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출산정책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소영, 2007; 한은주·박정윤, 2006).

한은주와 박정윤(2006)은 둘째 자녀 출산가능자 중 11.3%가 상황에 따른 출산 결정이며 이들에 대한 욕구와 충분한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출산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출산율이 감소하여도 첫 출산 자체가 여전히 보

편적인 현상이며,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대상은 첫째 아를 이미 출산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신인철, 2009). 따라서 기혼 여성들이 둘째 아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과 이들의 둘째 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저출산 관련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정책대상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둘째 아 출산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취업중인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른 둘째 아 출산계획을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 여성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출산 장려 정책 선호도와 취업 중인 기혼여성들의 근로시간에 따른 둘째 아 출산계획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건소, 어린이집 및 아파트 부녀회에 협조를 구하였으며,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지역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연구에 협조하기로 한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설문지를 각각 250부씩 우편으로 배부와 직접 배부한 후 회신된 설문지가 총 340부였으며 이중 부실기재 및 누락된 문항이 많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322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20~30분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2.1세(표준편차=4.3)이며, 최소 21세에서 최고 43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대상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36명(11.3%), 대졸이하가 250명(78.3%)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33명(10.3%)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전문대 및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가 201명(62.4%), 미취업자가 121명(37.6%)이었으며, 취업자의 62.0%(116명)가 전문직 종사자였고, 사무 및 관리직이 31.5%(59명), 그리고 판매 및 서비스직이 6.4%(12명)이었다.

## 2. 변수 및 측정방법

### 1) 종속변수

#### (1) 둘째 아 출산 의도

인구사회학적 배경 부분에서 출산계획에 대해 '① 부부 둘 다 출산을 원한다 ② 나만 원한다 ③ 남편만 원한다 ④ 둘 다 원하지 않는다 ⑤ 모르겠다'의 5점 척도로 질문한 뒤, 이 중 ①과 ②에 응답한 결과를 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각 출산장려 정책에서의 출산의도는 "( )지원이 출산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기술한 뒤, 괄호에 들어갈 정책들을 나열하고 각 정책들을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피검자가 나열된 각 정책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각 정책 영역별로 문항 하단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설문지에 수록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독립변수

#### (1) 인구사회학적 변수

본 연구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 소득, 현재 취업 여부이다.

#### (2) 근무시간

취업 중인 대상자의 근무시간은 주당 근무시간과 주당 근무일수로 측정하였다.

#### (3) 출산장려 정책

정부에서 시행중인 1기 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원정책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의 내용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다.

둘째, 임신과 출산 지원정책은 고통출산으로 인한 고위험 임신부 증가, 결혼 연령 증가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불임 증가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셋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직장 여성에 초점을 맞춘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넷째, 육아 인프라 지원정책은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정 내 자녀양육이 약해져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제 2차 기본계획은 1차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된 사항(보건복지부, 2010)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의 명목척도와 정책의 단일문항들은 비모수 검정법인  $\chi^2$  검정과 Mann-Whitney의 U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둘째 아 출산계획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유의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둘째 아 출산계획과 인구사회학적 변수 탐색

취업 여부에 따라 한 아이를 둔 기혼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둘째 아 출산계획 유무에 대한 분석결과, 취업 여성들의 경우 20대 여성들은 둘째 아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6.7%였으며, 30대 초반의 경우에는 54.1%, 30대 후반 이상은 27.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21.90$ ,  $p<0.001$ ).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둘째 아 출산 계획이 53.6%였으나, 500만원 미만은 37.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chi^2=4.56$ ,  $p<0.05$ ), 주당 근무일도 5일 이하가 47.1% 출산계획이 있었던 반면 5일 초과근무자들은 16.7%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11.20$ ,  $p<0.01$ ). 그러나 주당 근무시간의 경우 출산계획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0.47$ , n.s.). 미취업 여성의 경우 연령대와 월소득 모두 둘째 아 출산계획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lt;표 1&gt; 한 아이를 둔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둘째 아 출산계획 간의 차이

	취업 여성		미취업 여성		n(%)
	출산계획 유	$\chi^2$	출산계획 유	$\chi^2$	
<b>연령대</b>		21.90***		4.01	
29세 이하	29(61.7)		19(54.3)		
30-34세	46(45.5)		20(36.4)		
35세 이상	8(16.0)		8(28.6)		
<b>월 소득</b>		4.56*		0.94	
500만원 미만	48(37.8)		39(41.9)		
500만원 이상	37(53.6)		5(29.4)		
<b>주당 근무일</b>		11.20**			
5일 이하	74(47.1)				
5일 초과	6(16.7)				
<b>주당 근무시간</b>		0.47			
40시간 이하	30(44.8)				
40시간 초과	50(39.7)				

주: \* $p<0.05$ , \*\* $p<0.01$ , \*\*\* $p<0.001$

## 2. 둘째 아 출산계획과 제 1차 출산지원 정책 분석

취업여부별 한 아이를 둔 여성들의 둘째 아 출산계획에 따른 출산지원정책들의 영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취업여성들의 둘째 아 출산계획 유무 집단 간 각 영역별 출산지원정책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과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정책, 육아인프라 지원정책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임신과 출산지원정책( $Z=1.96$ ,  $p<0.05$ )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Z=2.20$ ,  $p<0.05$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신과 출산 지원정책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Z=2.64$ ,  $p<0.01$ ),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하위요인에서는 직장의 산전·후 휴가제도( $Z=2.47$ ,  $p<0.05$ ), 직장의 육아휴직제도( $Z=2.37$ ,  $p<0.05$ ), 출산 및 육아휴가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Z=2.27$ ,  $p<0.05$ )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Z=2.64$ ,  $p<0.05$ )에서 모두 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육아인프라 지원정책의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양적·질적으로 양호한 국공립 보육시설( $Z=2.21$ ,  $p<0.05$ )과 직장내 보육시설( $Z=2.07$ ,  $p<0.05$ )에서 모두 둘째 아 출산의도가 있는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 영역별 총점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정책의 영역에서 하위요인인 다자녀가정의 세제개편 ( $Z=1.66, p<0.10$ )과 다자녀가정에 주거안정 지원정책( $Z=1.70, p<0.10$ ), 임신과 출산 지원정책영역에서 불임부부의 지원( $Z=1.72, p<0.10$ ) 정책이 .10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표 2 > 제 1차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둘째 아 출산계획의 차이

제 1차 출산지원정책	M(SD)					
	취업 여성(n=201)			미취업 여성(n=121)		
	출산계획 유	출산계획 무	Z	출산계획 유	출산계획 무	Z
<b>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b>	19.98(4.36)	18.73(5.25)	1.51	19.8(4.77)	19.21(4.69)	0.85
0-4세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3.79(1.02)	3.54(1.18)	1.38	3.84(1.22)	3.68(1.16)	0.82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4.15(0.95)	3.85(1.16)	1.72	3.94(1.13)	3.99(1.01)	0.07
두 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4.13(1.01)	3.82(1.18)	1.89	4.11(1.05)	3.99(1.04)	0.68
아동수당 제도 도입	3.99(1.05)	3.82(1.08)	1.18	3.98(1.03)	3.89(1.07)	0.45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3.95(1.09)	3.80(1.18)	0.89	3.97(0.94)	3.63(1.19)	1.48
<b>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정책</b>	15.79(3.54)	15.34(4.32)	0.53	15.8(3.85)	14.69(4.06)	1.46
다자녀가정의 세제개편	3.97(1.00)	3.92(1.09)	0.32	4.06(0.99)	3.75(1.03)	1.66 †
다자녀가정에 주거안정 지원정책	3.93(0.93)	3.83(1.13)	0.46	3.99(1.00)	3.63(1.13)	1.70 †
주택자금 대출해택부여	3.86(0.99)	3.79(1.13)	0.30	3.93(0.99)	3.68(1.11)	1.23
출산크레디트	4.00(0.97)	3.79(1.11)	1.20	3.80(1.06)	3.64(1.05)	0.76
<b>임신과 출산 지원정책</b>	24.10(4.77)	22.49(5.86)	1.96 *	24.41(5.38)	23.35(5.34)	1.10
자연분만비의 정부지원	3.66(1.06)	3.45(1.13)	1.41	3.81(1.04)	3.58(1.06)	1.19
주요 산전검사의 비용 지원	4.06(0.86)	3.80(1.09)	1.54	4.02(0.99)	3.94(0.99)	0.47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3.92(0.97)	3.71(1.05)	1.49	4.13(0.88)	3.90(1.00)	1.17
불임부부의 지원	4.03(0.93)	3.76(1.07)	1.86	4.11(1.03)	3.78(1.09)	1.72 †
산모도우미 지원	4.15(0.84)	3.93(1.04)	1.24	4.11(0.98)	4.01(1.01)	0.47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4.25(0.81)	3.86(1.08)	2.38 *	4.19(0.90)	4.12(0.96)	0.28
<b>일·가정 양립 지원정책</b>	22.00(3.90)	20.64(4.41)	2.20 *	20.7(4.68)	20.47(3.97)	0.66
직장의 산전·후 휴가제도	4.39(0.83)	4.13(0.87)	2.47 *	4.11(0.96)	4.10(0.83)	0.23
직장의 육아휴직제도	4.49(0.79)	4.23(0.87)	2.37 *	4.21(1.02)	4.05(0.96)	1.14
출산, 육아휴가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4.47(0.82)	4.20(0.94)	2.27 *	4.19(0.99)	4.08(0.90)	0.82
비정규직을 위한 계속 고용 장려	4.18(0.89)	3.99(1.03)	1.17	4.02(1.07)	3.99(0.94)	0.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46(0.85)	4.10(1.05)	2.64 **	4.17(0.99)	4.19(0.90)	0.01
<b>육아인프라 지원정책</b>	21.40(3.62)	20.33(4.38)	1.62	20.95(4.06)	20.18(4.35)	0.92
양·질적으로 양호한 국공립 보육시설	4.43(0.82)	4.12(1.02)	2.21 *	4.24(0.94)	4.18(0.94)	0.35
양·질적으로 양호한 사설보육시설	4.06(0.98)	4.01(0.95)	0.40	4.02(0.94)	4.07(0.96)	0.27
정부의 보육서비스 지원	4.34(0.86)	4.13(0.90)	1.74	4.22(0.91)	4.07(0.90)	1.04
직장 내 보육시설	4.50(0.78)	4.25(0.93)	2.07 *	4.35(0.84)	4.10(0.95)	1.47
24시간 육아보육 시설 운영	4.04(1.10)	3.87(1.10)	1.48	4.04(1.00)	3.81(1.17)	0.96

주: † $p<0.10$ , \* $p<0.05$ , \*\* $p<0.01$ , \*\*\* $p<0.001$

### 3.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근로여건, 출산지원정책이 둘째 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취업 여성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출산지원정책, 그리고 근로여건을 고려한 3단계의 모형을 수행하였고, 미취업 여성은 근무여건을 제외하고 총 2단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취업 여성의 최종 모형의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chi^2=6.624$ , n.s.), 분류정확도는 76.5%였고, 최종 모형은 출산계획의 40.0%를 설명하였다(Nagelkerke  $R^2=.400$ ). 연령대와 월소득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은 절편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2LL(Log Likelihood)값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chi^2=37.22$ ,  $p<0.001$ ), 연령대와 월소득 변인은 유의하였으나, 학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출산지원정책을 투입한 2단계 모형에서 -2LL값의 감소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chi^2=9.89$ , n.s.),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투입한 최종 3단계 모형에서는 유의한 -2LL값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chi^2=11.42$ ,  $p<0.01$ ), 최종모형에서 임신과 출산지원 정책( $b=.10$ ,  $p<0.05$ )과 주당 근무일( $b=2.03$ ,  $p<0.01$ )이 유의하였다.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5세 이상의 집단을 기준으로 20대( $b=2.83$ ,  $p<.001$ )와 30대 초반( $b=2.11$ ,  $p<.01$ ) 집단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아 출산계획에 대한 승산비(Odd Ratio: OR)는 35세 이상 집단을 기준으로 20대가 16.95배, 30대 초반이 8.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 대한 분석결과 500만원 미만의 소득집단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 소득( $b=1.21$ ,  $p<.01$ ) 집단의 승산비가 3.35로 유의하였다. 출산지원정책의 경우 임신과 출산지원정책이 1.11배의 승산비를 보였고, 주당 근무일에 대한 분석결과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집단이 5일 초과 근무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7.60배의 승산비를 나타냈다. 그러나 주당 근무시간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 최종 모형의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chi^2=6.31$ , n.s.), 분류정확도는 63.6%였고, 최종 모형은 출산계획의 15.7%를 설명하였다. 단계별로 인구학적 변수와 출산지원정책을 투입한 결과 유의한 -2LL값의 감소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각 독립변수들도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3&gt; 연령과 근무일이 둘째 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수	취업여성(n=201)			미취업 여성(n=121)		
		b	OR	$\Delta$ -2LL	b	OR	$\Delta$ -2LL
1	<b>연령대</b>			37.22***			4.03
	20대	2.83***	16.95		.78	.46	
	30~34세	2.11**	8.21		1.11	.33	
	35세 이상(기준)						
	<b>월 소득</b>						
	500만원 미만(기준)						
	500만원 이상	1.21**	3.35		-.40	.18	
	<b>학력</b>						
	고졸 이하(기준)						
	대졸 이하	1.31	3.72				
	대학원졸 이상	.30	1.35				
2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	.10	1.11	9.89	-.11	.90	6.31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정책	-.22	.80		.17	1.18	
	임신과 출산 지원정책	.10*	1.11		.09	1.10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04	1.04		-.06	.94	
	육아인프라 지원정책	.03	1.04		.01	.27	
3	<b>주당 근무일</b>			11.42**			
	5일 이하	2.03**	7.60				
	5일 초과(기준)						
	<b>주당 근로시간</b>						
	40시간 이하	.26	1.29				
	40시간 초과(기준)						

주: \*p<0.05, \*\*p<0.01, \*\*\*p<0.001

#### IV. 논의

본 연구는 저출산 경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 관련 변인을 파악하고, 둘째 아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탐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둘째 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근로시간, 출산지원 정책들을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둘째 아 출산 계획을 살펴본 결과, 취업 중인 기혼 여성들의 경우 연령이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지만 20대에서 66.7%로 가장 높은 둘째 아 출산계획을 보였고, 30대 초반의 경우에는 54.1%, 30대 후반 이상은 27.1%를 보였는데, 생물학적 출산연령이 가장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35세 이상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승산비가 각각 7.96배와 18.47배로 나타나 20

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연령대가 2차 출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성용(2009)의 연구결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또한 김승권·최민자·이연주·박정한·선우덕·조성현·곽혜경·조애저·김유경·강옥희(2005)가 20~24세, 35~39세 연령층에서 이미 출산을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20~24세 집단의 출산을 감소의 주요인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고용기회의 확대, 초혼연령의 상승을 들 수 있으며, 35~39세 집단의 출산을 감소는 소자녀 가치관 형성에 따른 피임 실천률 증가, 기혼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볼 수 있다(공선영, 2006). 그러므로 20대 후반과 늦어도 30대 초반까지 2차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결혼비용의 감소와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여 만혼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소자녀 가치관의 변화와 취업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월수입을 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둘째 아 출산의도를 분석한 결과, 취업여성에서는 월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둘째 아 출산의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OR=3.06), 미취업 여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여성에서는 가계소득 역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취업 여성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따른 분석에서는 주당 근무일이 5일 이내인 집단이 5일 초과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둘째 아 출산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당 근무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주당 5일 초과 근로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이하 근로집단의 둘째 아 출산의도 승산비가 7.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이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가 있는 취업 기혼 여성들은 주 5일 초과 근무로 인한 출퇴근 부담과 여가시간의 부족, 아이를 맡기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압축근로제 등을 실시하는 등 근로제도 개선도 기혼 취업 여성의 출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의 준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둘째 아 출산의도를 대상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취업 집단에서는 임신·출산지원 정책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유의한 지지도를 보였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는 '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출산·육아휴가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에서 유의한 지지도

를 보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좀 더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육아 인프라 지원정책에서는 '양적·질적으로 양호한 국공립 보육시설', '양적·질적으로 양호한 사설 보육시설' 그리고 '직장 내 보육시설'에서 유의한 지지도를 나타냈다.

2002년부터 실시된 육아휴직제는 그 활용도 면에서 일본 89.7%, 독일 85%에 비하면 다소 낮은 41.1%에 머무르고 있다(김민재, 2009).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제가 제 구실을 못하는 이유는 승진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휴직 기간 중의 임금이 통상임금의 절반에 못 미치며, 기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기존 직원에게 일을 떠맡겨 다른 직원에게 업무 부담을 주는 것이 미안해서 육아 휴직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소득과 경력, 자아실현과 같은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마련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도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1970년대부터 양성평등모델을 지향하여 가치적인 출산율 회복을 이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적 일·가정 양립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출산율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즉, 취업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부담에 저해받지 않고 얼마나 일·가정 양립을 잘 할 수 있는지, 또한 가족 내 부부관계의 양성 평등정도는 어떠한 지가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윤경자, 2010).

취업 여성들은 '육아휴직제도'보다는 '육아기 단축근로제'에서 좀 더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자아실현과 근무의 연속성 그리고 가계소득 보전을 동시에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탄력근무제와 단축근로제의 정착이 이루어져 육아기 취업여성들의 근무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겠다. 업종에 따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 또한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육아인프라 지원정책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 내 보육시설'정책에 가장 높은 지지도를 나타내었다. 정부에서도 2005년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2010년 노동부예규와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의 이행률은 66.2%로, 설치가 35.9%, 수당지급이 24.7%, 위탁이 5.6%를 차지하였으나, 미이행율도 33.8%를 차지하고 있다(보건

복지부, 2009). 정부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주들의 인식부족, 설치비용 부담 및 경영 문제 등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보육시설은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 우수 인력의 경력단절 극복 및 활용 극대화, 자녀와의 심리적·물리적 거리의 단축으로 생산성 확보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2010),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판단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늘리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는 물론 기업주들의 인식 제고, 설비요건 완화 및 운영방법의 다양화가 뒤따라야 한다.

비취업 대상자의 경우에는 6개 영역의 정책 모두 유의미한 지지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 정책에서 ‘다자녀가정의 세제 개편’,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지원정책’ 그리고 임신·출산 지원정책에서 ‘불임부부 지원’에서  $p < 0.1$  수준에서 지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여성 중에 구직 희망자를 통제하지 못하여 올 수 있는 결과로도 해석되는 바, 본 연구의 결과의 확대 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취업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근무조건 그리고 정책적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과의 요구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두 집단의 요구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여성의 연령이 둘째 아 출산의 가장 강력한 변수로 확인된 바, 만혼화를 억제하도록 결혼비용을 줄이도록 신혼부부 주택마련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혼 후 첫 자녀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유도하고 첫 자녀 출산 후, 양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첫 자녀 출산부터 둘째 자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스피드프리미엄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 주당 근로시간보다 주당 근로일수가 강력한 둘째 자녀 출산 유도 변인이 확인된 바, 근로기준법의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일용직으로 자발적인 초과근로를 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경우, 이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앞서 기술한 스피드 프리미엄제나 임신수당과 아동수당 등의 제도를 통해 소득 보전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취업 여성이 일·가정 양립과 양질의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육아기 단축근로제의 확대시행으로 육아기 취업여성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고 근무의 연속성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미취업 여성도 안심하고 둘째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과 동시에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 확산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임신수당과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방식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있는 대상자만을 표집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한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어린이집과 보건소의 예방접종실을 방문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표집함으로써 취업 대상자와 미취업 대상자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표집 편중이 작용했을 수 있음을 또한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를 가진 기혼 취업 여성들의 연령대에 따른 출산 의도의 차이, 특히 근무시간보다 근무 일수가 출산의도에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고 기존에 일·가정 양립 육구 외에 ‘단축근로제’ 도입 등 근로제도 개선의 필요성의 근거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선영 (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119-147.
- 국회예산정책처 (2009)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2010) 《저출산대책특별법안 재정소요 추계》.
- 권형례 (2009) 《가임 연령 미혼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재 (2009)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김승권·최민자·이연주·박정환·선우덕·조성현·곽혜경·조애저·김유경·강옥희 (2005)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보건사회연구원.
- 김옥암 (2000) 《인구경제학》 서울: 유림문화사.
- 김혜정 (2010) 《미혼남녀별 결혼 및 자녀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3.

보건복지부 (2009)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

삼성경제연구소 (20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 CEO information 752.

신경림·김일옥·이혜영 (2010) 《가족과 함께 하는 출산·육아 건강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보건복지부.

신인철 (2009)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계획에 대한 공간 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2(2): 59-85.

윤경자 (2010) “부산광역시 초저출산의 가족학적 요인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한국인구학》 33(2): 137-163.

은기수·전광희·윤홍식·김수정 (2005)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 국제대학원.

이상호·이상현 (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성용 (2009)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 32(1): 51-77.

이소영 (2007)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성호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정혜은·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47-164.

조영태 (2009) “서울시의 저출산 현상 분석: 인구학적 접근. 서울시 저출산 대응 국제정책 포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2010) “직장보육시설설치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설명회”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한은주·박정윤 (2006)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11): 1-12.



## The Effect of Policy on Childbirth Encouragement and Working Time on Secondary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Il-Ok Kim · Hee-Jung Wang · Goo-Churl Jeong · So Young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ive policy on secondary childbirth encouragement of married women. The design for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Samples were collected from 322 women who have one child younger than 6 years old.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as a questionnaire consisted of items about policy on childbirth encouragement. The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Mann-whitney's U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ith SPSS 17.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mployed women's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was affected by the age, working day per week, and policy on childbirth. But, in case of unemployed women, both of demographic and policy variabl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ifferent policy on support of birth, work-family life balance, and various tax benefits be developed to satisfy the needs of the employed women and the unemployed women.

**Key Words: Birth rate, Childbirth encouragement, Working hours, Childbirth intention, Secondary childbirth**